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,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, 조정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m ²)	비 고
합 계			375,525	
서울특별시	용산구	용산동2가 1-597 일대	53,734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
	용산구	이태원동 214-37 일대	66,986	
	마포구	합정동 444-12 일대	40,753	
	은평구	녹번동 35-78 일대	20,320	
	종로구	행촌동 210-2 일대	76,310	
	금천구	시흥동 1-1 일대	24,901	
	구로구	구로동 739-8 일대	92,521	

○ 지정기간 :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

2. 허가구역 조정(구역변경) 대상지역

1) 구역변경 1개소

○ 신속통합기획(주택재개발) 선정지(1개소)

대상지역	면적(m ²)			비고
	변경전	변경후	증감	
마포구 공덕동 11-24 일대	82,320.2	84,389.0	증 2,068.8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
○ 지정기간 :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

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'25. 11. 11.) / 제척필지 효력발생일('25. 11. 6.)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지정, 조정 공통사항)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 m ² 초과
	상업지역	15 m ² 초과
	공업지역	15 m ² 초과
	녹지지역	20 m ²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 m ²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*

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6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- 붙임 1 (지정 7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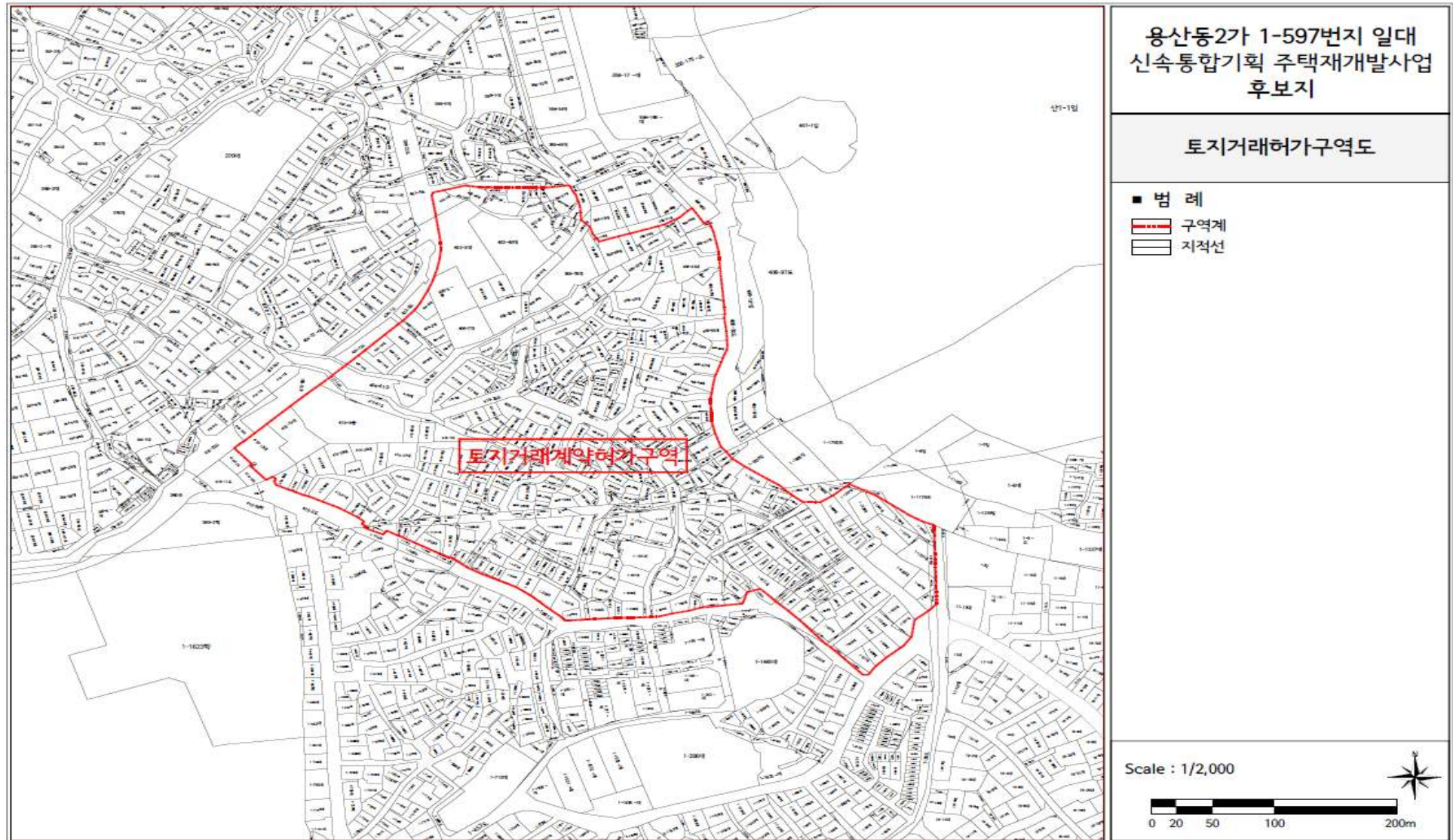
- 붙임 2 (조정 1개소)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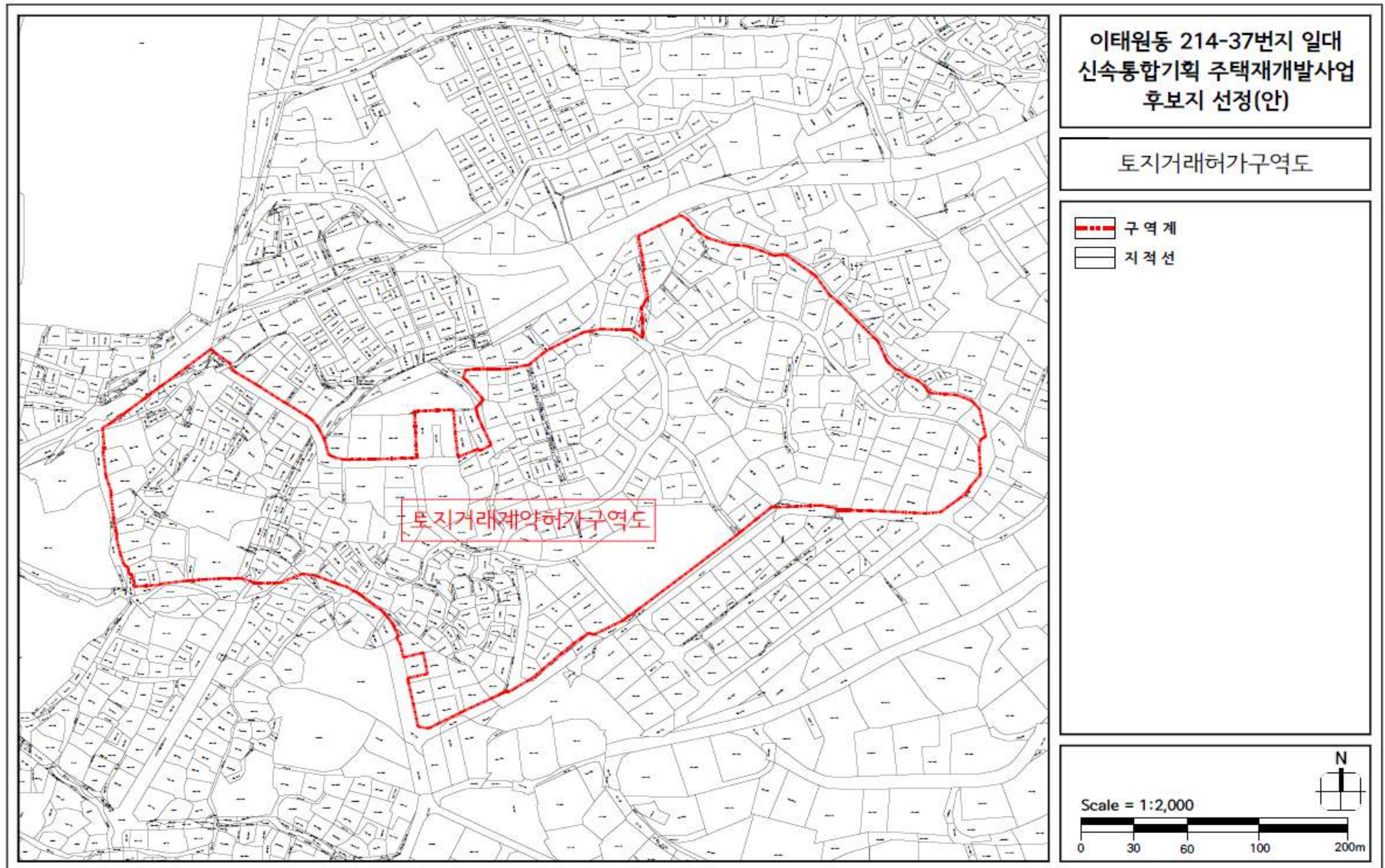
붙임 1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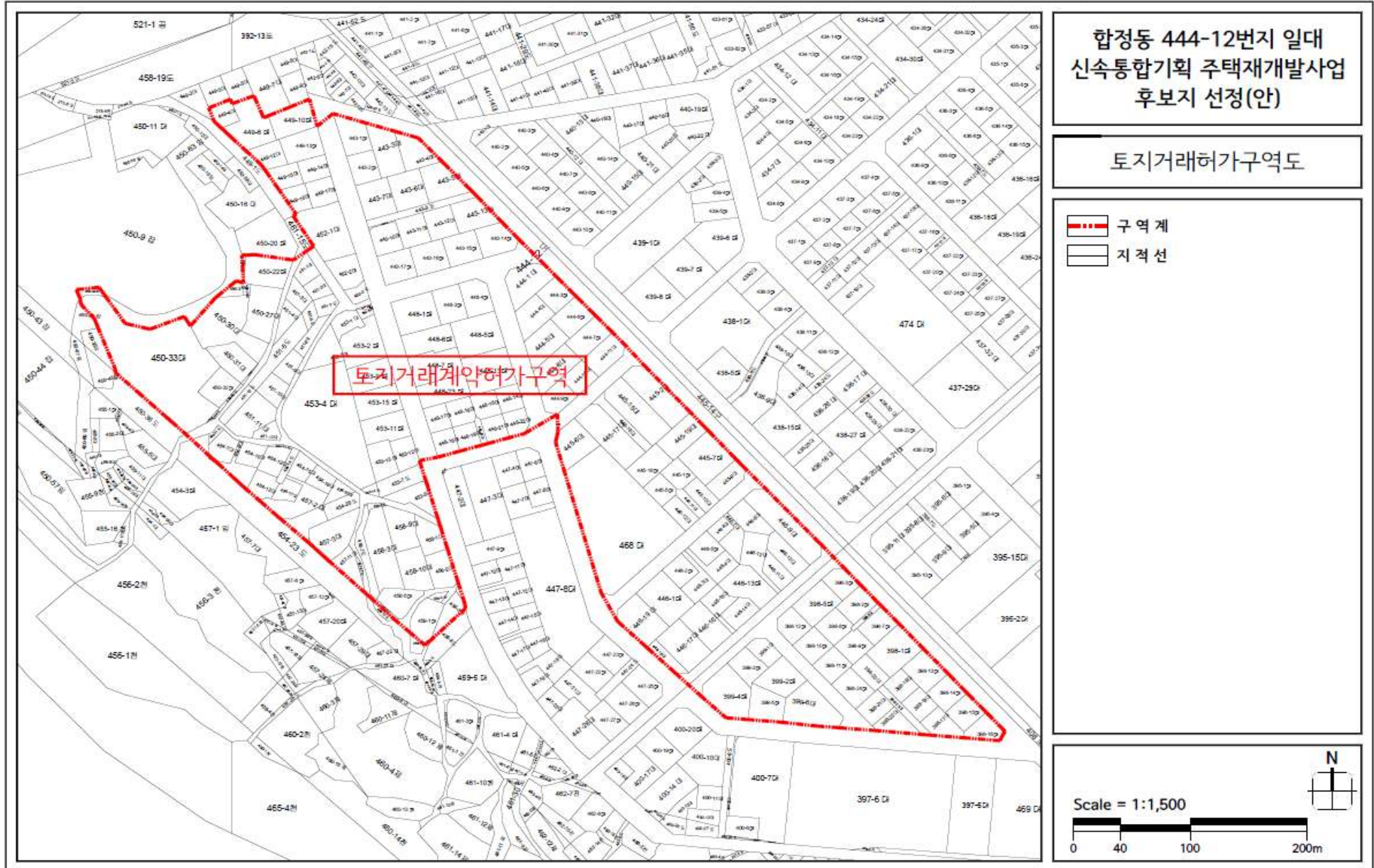
1. 용산구 용산동2가 1-597 일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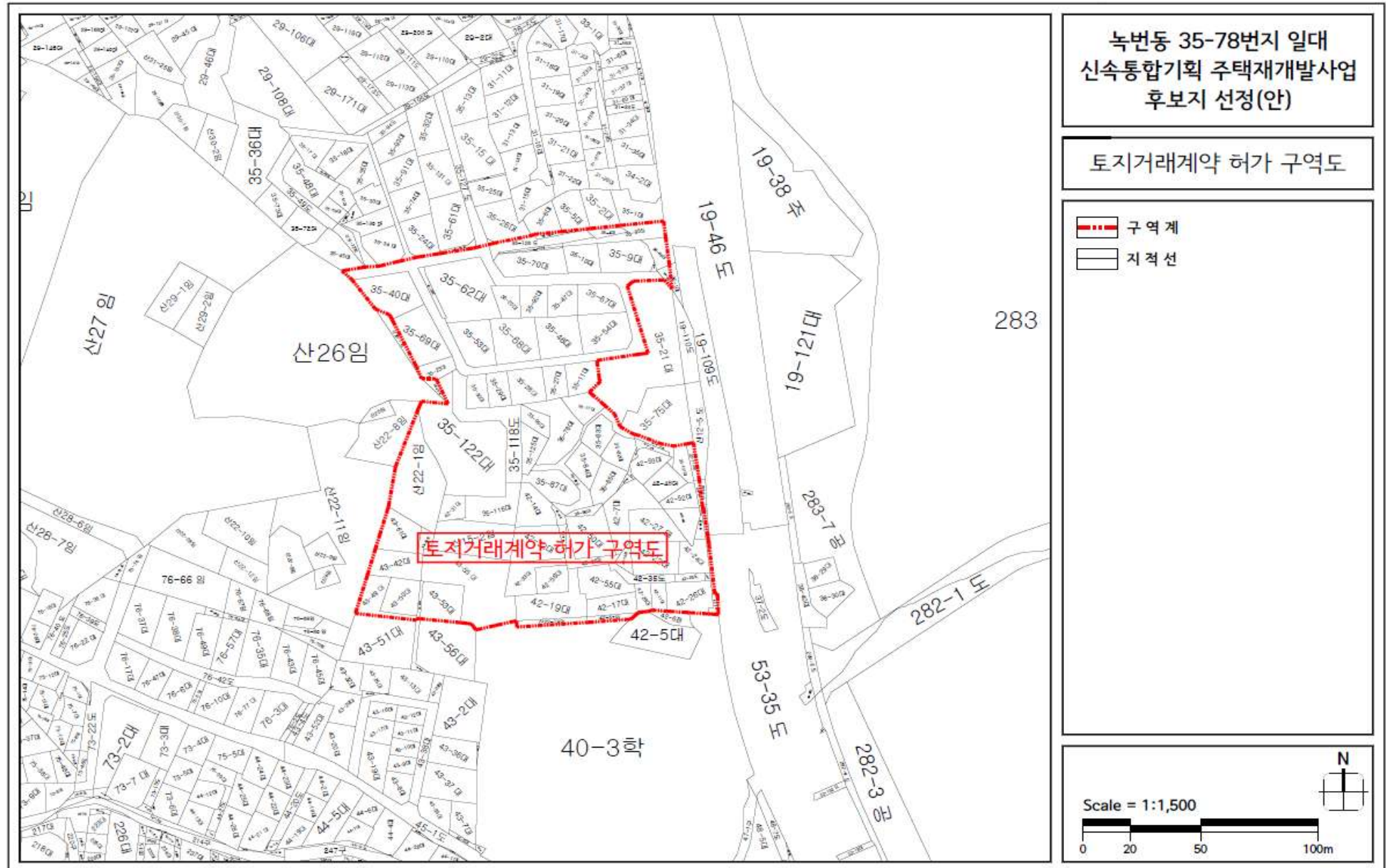
2. 용산구 이태원동 214-37 일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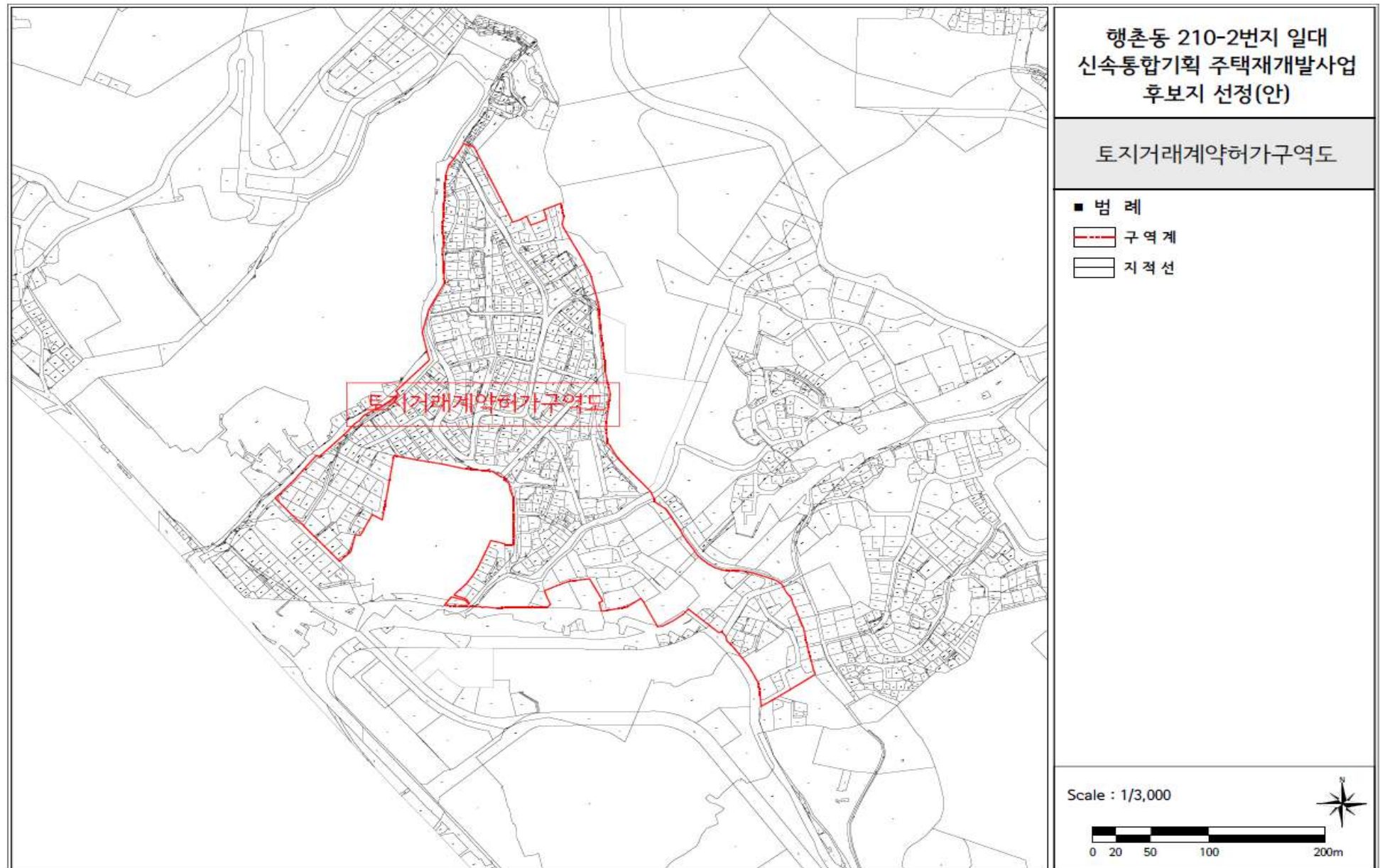
3. 마포구 합정동 444-12 일대



4. 은평구 녹번동 35-78 일대



5. 종로구 행촌동 210-2 일대



6. 금천구 시흥동 1-1 일대



7. 구로구 구로동 739-7 일대

